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경숙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8월 23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26일

3. 제안이유

사료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한우 생산비가 증가되고, 한우 사육두수의 증가에 따른 경락가의 폭락으로 농가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바 충청북도내 한우 수급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충북 한우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명의 개정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북한우 육성지원 종합계획 내 수급조절 관련 사항 명시 (안 제4조)
- 종합계획에 따른 수급조절에 대한 한우농가의 협조 (안 제5조)
- 관련 조례명의 오기 수정 및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안 제6조)

- 조례상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안 제 8조 및 제9조)
- 충북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최근 사료값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와 한우 경락가격 폭락으로 한우농가는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통계청의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한마리를 키워 출하를 하면 143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한우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한우 경락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한우 도매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우 소비자 가격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한우 소비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우산업의 위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충북 차원의 지속적인 한우 수급조절과 한우 판로 개선을 위한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제명의 개정은 본 조례의 취지와 그 내용이 충청북도 한우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4조~제6조는 충북한우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한우 수급 조절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한우농가는 한우수급조절에 협조해야 하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충북 차원의 지속적인 한우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안 제8조~제9조는 한우개량 및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상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사업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 안 제10조의2는 충북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한우 소비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한우농가의 판로 개선에 기여하고자 지원근거를 구체화 한 것으로 본 조항의 신설은 타당하다 판단됨

다. 상위법령 등 검토

- 「축산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고, 동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는바 충북 한우의 수급조절과 판로개선을 위한 브랜드육성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 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종합의견

- (필요성) 본 조례는 한우 경락가의 폭락으로 한우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충북도 차원의 지속적인 한우 수급조절과 한우 판로 개선을 위한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타당성) 본 조례에서는 한우 수급조절 관련 종합계획, 한우농가의 협조,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과 충북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외 제명의 개정과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사업추진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한우 수급조절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과 한우 브랜드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통해

한우 경락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 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며,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충북한우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한우 수급조절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키고, 충북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임